

구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7.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이 증대됨에 따라 SNS 활성화를 위한 제반 절차와 추진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SNS 개설,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나. SNS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다. 공로자 포상 및 SNS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구미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서포터즈”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SNS에 게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SNS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SNS 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예술·체육·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재난관리,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5조(SNS의 활용) ① 시장은 SNS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및 시정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SNS를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 자 하는 경우

2. 축제·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

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SNS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식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④ 서포터즈는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 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SNS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즈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서포터즈 회의에 참석한 서포터즈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원고료 지급 등) ① 시장은 서포터즈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은 원고료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시와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③ 시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취재 등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에게는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SNS 민원) ① 시장은 이용자가 게시한 SNS 민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협조를 얻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SNS 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 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SNS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SNS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기관,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SNS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구미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략

3. ~ 4.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다. 생략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생략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구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본 조례 제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정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음.
-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은 안 제5조(SNS의 활용), 제7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제8조(원고료 지급 등), 제9조(포상), 제11조(SNS 운영의 위탁)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의 내용은 재정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보 이기훈(480-6722)

소관 실 · 과		홍보담당관실
입 안 자	과 장	이 창 희
	담 당	박 노 돈
	담 당 자	이 기 훈 (480-6722)